국가표준정책연구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스마트제조혁신 표준 및 제조공정 참조모델 개발을 통한 표준 기반 제조현장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 중인 『국 가표준정책연구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	표 제조공	'정 참조도	모델 및 4	스마트공장	표준개발을	통한
중소제조기업의	리 표준화	공정 구축	* 촉진 및	표준교육을	통한 활용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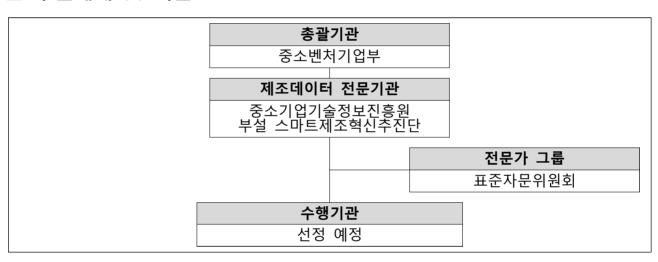
- □ **사업내용**: 중소제조기업 현장 맞춤형 제조공정 참조모델, 스마트 공장 표준 개발 및 제조 현장의 표준 활용·확산을 위한 교육 개발
 - (제조공정 참조모델 개발) 제조데이터 표준화에서 도출된 대표 공정의 작업 순서, 필요 장비·사양 등의 공정모델 개발
 - (표준개발) 중장기 스마트공장 표준개발 로드맵 및 기업수요 등을 반영하여 중소제조현장에 적합한 스마트제조 표준개발
 - (교육·확산) 사업 결과물의 활용·확산을 위해 기업 담당자를 대상 으로 KS·단체표준 등 교육 개발·운영·확산
- □ 지원근거: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 □ 지원규모 : 최대 3년, 15억원 이내(연간 최대 5억원)
 - 국회 예산심의 및 연차별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기간, 예산 (중액, 감액 포함), 업무 범위 등 조정하여 재협약 가능
- □ 지원조건 : 최대 3년, 연간 5억원 이내, 정부 출연 100%(인프라성 간접지원)

구분	지원 기간	지원 금액	정부출연 비율	모집수	비고
수행기관	최대 3년	5억원 이내 (연간)	출연 100%	1개	-

* 과제 평가단계에서 사업비 조정 가능

□ 추진체계 및 역할



구분	주요 역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 총괄 ■ 사업 예산 확보 및 대응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데이터 생태계 조성 사업 지침 제·개정 및 수행기관 평가·관리 외부 기관과의 협력 추진 정부사업(자율형공장, 디지털협업공장 등) 연계방안 기획 		
수행기관 (1개, 선정 예정)	■ 제조공정 참조모델 및 스마트공장 표준 개발 ■ 스마트제조 참조모델개발분과위원회/표준개발분과위원회 운영 ■ 대상별(기업, 전문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스마트제조혁신 표준 확산 기반 마련		

2. 신청자격

※ 컨소시엄 구성은 의무가 아니며, 신청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구성

□ 신청자격 및 필수요건

- (신청자격) 중소·중견·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기관(협·단체), 대학, 연구소 등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기업)
 - (주관기관) 스마트제조혁신에 대한 지식·기술을 보유하고, 제조 공정 참조모델 및 스마트공장 표준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
 - (참여기관) 특정 분야(IT, 데이터, 공정, 장비 등)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과업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

□ 지원제외 사항

- ※ 협약대상으로 선정되어 <u>협약이 진행된 이후</u>라도 <u>지원제외 요건이 확인</u>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협약해약 처리
- ※ 전문기관은 관련 지원제외 요건 관련 <u>증빙서류를 요구</u>할 수 있으며, <u>미제출 시에는</u> 지원 제외 처리
- 접수 마감일('25.03.20.) 기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참여제한,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제한업종 등 지원제외 요건(아래 표 참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 주관 및 참여기관·기업 모두 해당하며 신청기관별 자체 확인 후 신청 필요

< 지원제외 요건 >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최근 결산 연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미해당)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완전자본잠식 :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 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경우

3. 핵심 요구사항

※ 수행기관 <u>사업기간</u>은 <u>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u>로 사업계획을 <u>작성</u> 하여 제출하며, 협약 시 재안내 예정

① 제조공정 참조모델 개발 및 확산

- ※ 제조공정 참조모델 : 업종별 제조업에서 제품을 제조 과정에 대한 작업순서, 필요장비 등을 포함한 공정 전반을 설명하는 표준화된 체계
- (공정모델 개발) 스마트제조혁신 표준 기반 확대를 위한 중소제조 기업 정책 기준 마련을 위해 현장 맞춤형 제조공정 참조모델 개발
 - (개념 정립)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제조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제조공정 참조모델 개념 정립 및 필요성 제시

< 공정표준 설계 일부 예시(금속주물업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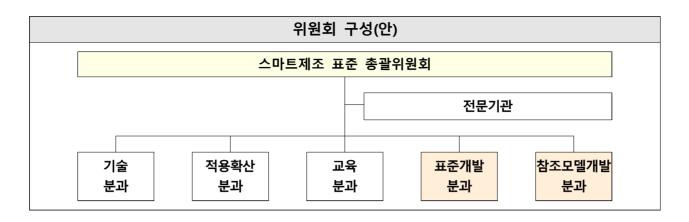
- (개발 목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산업연관표(IO) 등을 활용하여 제조현장의 모든 공정에 적용 가능한 공정모델 개발 목표 수립(240개 내외) 및 논리 구체적 제시
- (개발 방법론) 제조공정 참조모델 개발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27년까지 개발목표 및 확산 방안 수립
 - * '27년까지 매년 80개 이상씩 개발 필수(선정평가 완료 후 조정 예정)
- (공정모델 확산) 기개발 제조공정 참조모델에 대한 확산 방안 및 정부 사업 연계방안을 연차별 계획 수립
 - (정부사업 연계) 표준참조모델 연계, 자율형공장 도입 검증, R&D 기획 등 정부사업에서 즉시 활용 될 수 있도록 모델 설계 필요

② 스마트제조혁신 표준 개발

- (계획 수립) 스마트제조 중장기 표준개발 리스트^{*}를 기반으로 매년 개발 표준 신규 도출 및 우선순위 재정립
 - * 붙임 1 참고
- 국제표준(ISO, IEC 등) 조사, 기업설문,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제조 현장에 필요한 표준 리스트를 도출·갱신 계획 제시(연차별 1회)
- (표준개발) 중장기 스마트공장 표준개발 로드맵 및 기업수요, 현장 활용도 등을 종합해 스마트공장 KS・단체표준 표준 개발(12개)
- 중소제조현장에서 활용가능한 표준을 우선순위*로, '27년까지 KS 부합화 표준 6개, 단체표준 6개 개발
 - *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한 표준개발 리스트(80개) 중 현장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제조현장에서 개발이 시급한 표준을 우선 개발
- 표준개발은 용역 완료시점 기준으로 예고고시 제출단계까지 완료
- (가이던스 개발) 개발한 KS・단체표준의 기업 활용률 제고를 위한 표준도입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③ 스마트제조혁신 표준 기반 확대

- (위원회) 현재 추진 중인 제조데이터 표준화 총괄위원회와 연계 하여 표준 개발 및 참조모델 개발 분과 구성·운영계획 수립
- (구성·운영) 각 분과별(2개)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 6인으로 구성하고 월 1회 이상 운영
 - * 위원 명단은 추후 전문기관에서 제공
- (기타) 전문기관에서 운영 중인 표준화 총괄위원회에 대한 행정 지원



- (교육프로그램) 표준 확산을 지원할 전문가 및 기업 실무자 대상 교육과정 개발(8개 이상) 및 3년간 운영계획 수립(아래표 참고)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제조데이터 표준 도입을 위해 정부 사업*등과 연계하여 시범교육 실시(30명 이상, 2회)
 -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자율형공장, 디지털협업공장 등), 제조DX멘토단 등
- 수행기관에서 보유한 인프라 등을 활용한 교육 운영방안 제시

< 교육과정 개발·운영 일정(예시) >

구분	'25년	'26년	'27년
교육과정 개발	4개 과정	4개 과정	기개발 과정 수정·보완
교육과정 운영	시범 교육	4개 과정	8개 과정

- (확산전략) 참여한 기관·기업의 역량을 활용하여 연구결과물의 확산전략(3개년)을 구체적으로 제시
- 민간 기관·기업,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 마련
- 정부 정책 자료* 등과 연계하여 연구결과물이 연계되어 중소제조 기업의 현장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제시
 - * 新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23.9),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24.10)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접수 마감일 17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7시 이후 신청·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 하므로 17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접수 마감 1~2일 전 신청완료 권고)
- ※ 사업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7시까지 가능
- □ **공모방식** : 수행기관에서 핵심요구사항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선정·추진
- □ 신청기간 : 2025년 3월 6일(목)부터 3월 20일(목) 17시까지
-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을 통해 서류 제출(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회원가입 → <u>모집공고 메뉴</u>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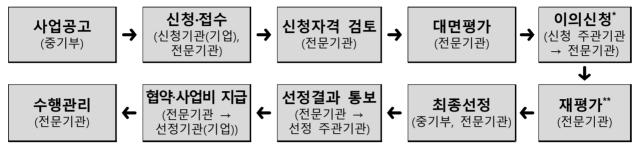
단계	연번	서 식 명	필수	해당시
	1	국가표준정책연구사업 사업계획서	0	
	2	발표자료(PPT) * 발표30분, 질의응답 30분 예정	Ο	
	3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참여 확인서(신청기관별 모두 제출)	0	
사업	4	청렴 서약서(신청기관별 모두 제출)	0	
│ 신청시 │ 일괄	(5)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신청기관별 모두 제출)	0	
제출	6	사업자등록증(신청기관별 제출)	0	
	7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별 제출)	0	
	8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신청기관별 제출)	0	
	9	컨소시엄 확약서		0

^{*} 접수마감일 기준 전년도 결산(관할 세무서 신고) 재무제표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 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5.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협약, 사업비 지급 등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 규모 등 접수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 서류 제출 및 수정 요청 불가

□ 선정절차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 평가절차가 종료된 후 1회에 한해 진행
-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 (평가절차)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6인 내외)하여, 사업계획서의 기관 역량, 개발적용 가능성, 확산, 파급효과 등을 평가
 - 사업계획 발표 30분, 질의응답 30분 등 총 60분 내외로 진행 예정
 - * 접수결과에 따라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에서 시간 일괄 변경 가능(추후 안내)
 - 주관기관 과제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 대표, CTO 등으로 변경 가능
 - < 국가표준정책연구사업 대면평가 평가표(안) >

평가항목	평가요소		
	o 제조공정 참조모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o 사업 수행인력에 대한 전문성		
개발 역량			
	o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적극성	적극성 o 핵심요구사항 이외에 추가수행 제안 등 적극적인 수행의지		
사업 이해도	o 사업목표, 사업범위, 추진내용의 적절성 및 정책 부합성	20	
시 다 이에도	o 사업계획서와 공고 요구내용의 부합성 및 확장 가능성	20	
	o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및 성과관리 적정성		
사업 관리역량	o 사업수행 일정에 따른 자원투입 내용의 적정성	30	
	ο 유사업무 수행실적		
컨소시엄 운영	컨소시엄 운영 o 컨소시엄 구성, 역할, 역량 및 협업 수행방안에 대한 적정성		
사업비 집행	o 사업 실행계획 대비 예산 편성에 대한 적정성	5	
	합 계	100	

- **(선정기준)**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기관(기업, 컨소시엄)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관(기업, 컨소시엄)을 협약 대상으로 선정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정
 - 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 대해 고득점을 획득한 기관(기업, 컨소시엄)을 우선 선정
 - * 참조모델 개발기관 : ①개발 역량 → ②사업관리 역량 → ③사업이해도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전문기관은 평가위원 의견에 따라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의견 미반영시 선정제외 가능
- 최종확정 사업계획서에 대해 전문기관과 수행기관 간 협약 체결
- 정부출연금은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가능 * 정부 예산 배정시기에 따라 조정 가능

6. 작성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사업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등 유·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으로 귀속되며, 대내외 공개·배포 예정
- 수행기관은 공고 및 첨부한 파일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파악한 후 사업 목적·범위·특징, 사업 수행전략, 요구조건 등을 명확하게 요약하여 기술
 - 사업계획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 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사용권
 및 특허권 등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전문기관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함
- 사업계획서에 대한 분량 제한은 별도 없음

7.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국가표준정책연구사업 관련 정책	044-204-7471
사업관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데이터전략실)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공고 세부내용	044-300-0943~4
시스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데이터전략실)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044-300-0943~4

☞ 관련 웹사이트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s://www.smart-factory.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